#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67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윤재옥·최수진·김정재

김기웅 • 이인선 • 김태호

김성원 • 김상훈 • 권영진

엄태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의 휴업 및 폐업과 관련해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휴업 및 폐업 규정을 준용하여 허가제로 규정 하고 있으나, 휴·폐업을 위한 제출서류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 한을 두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시외 또는 고속버스 이용객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늘어남에 따라 휴·폐업 사례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중장거리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주민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며 이동권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휴·폐업 시,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의2). 아울러,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소득원인 매표 수입의 감소액을 지자체가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50

조), 시외 또는 고속버스가 주민의 이동권에 필수적인 지역에서 여객 자동차터미널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률 제 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에"를 "법인의 합병, 상속 등에"로,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①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 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터미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50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48조(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제48조(준용규정)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 -----법인의 합병, 상 속 등에-----제14조(제2 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 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 항은 제외한다) 및 제15조를--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신 설> 제48조의2(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의 휴업ㆍ폐업) ①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 시·도지사의</u> 허가를 받 아야 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개 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 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터미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현저한 불 제50조(재정 지원) ① (생 략)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 4. (생 략)

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철회를 권고하거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넘지 못한다.
- ⑤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
  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
  은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재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 8. (생략)
- ③ (생략)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2. (생 략) <신 설>
- ⑤ ~ ⑨ (생 략)

4의2	. 1	터미널의	매표	숙	-입	감	소
액	을	보전할	필요기	<b>'</b> }	있	=	경
<u>우</u>							

- 5. ~ 8.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1. 2. (현행과 같음)
- 3. 제50조제2항제4호의2에 따라 터미널의 매표 수입 감소액을 보전하는 경우
- ⑤ ~ ⑨ (현행과 같음)